

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16. 8. 4.>

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(제38조제1항관련)

신 청 내 용	수 수 료
1. 건설업등록	
가. 토목공사업·건축공사업·조경공사업	6만원
나. 토목건축공사업, 산업·환경설비공사업	9만원
다. 전문공사업(가스시설시공업 제2종·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·제3종을 제외한다)	2만원
라.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·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·제3종	1만원
2.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(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)	2천원
3. 건설업분쟁조종	5만원